

2021 인삼집적지 온라인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서는 금산군 소재 인삼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인삼제품의 온라인 마케팅 홍보·판촉 지원을 하고자 「인삼집적지 온라인 활성화」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일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장 직인생략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대면 시장운영 및 관리 역량강화로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
- 지원규모 : 16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4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1년 10월 31일
- 지원방식 : 사업비 및 매칭지원(국비 400만원, 초과금액 자부담)
- 지원내용 : 사업계획서 온라인 쇼핑몰 전문 컨설팅기관 사전진단 후 1:1 컨설팅 커리큘럼 솔루션 제시 및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지원

지원항목	기준 및 범위	지원금액
온라인마케팅	① 쇼핑몰 멘토링 컨설팅 온라인 운영 정밀진단 및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커리큘럼 제시	최대 400만원
	② 콘텐츠 제작지원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제품사진 및 영상촬영 지원	
	③ 판매채널 입점 및 상품등록 지원 다채널 온라인몰 입점지원(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④ 온라인광고 및 SNS 활성화 홍보 지원 - 온라인광고(네이버 검색광고, 오픈마켓광고, 소셜커머스광고 등) - 소셜미디어 활성화작업(유튜브채널, 인스타그램) - 체험단 마케팅(인플루언서 활용)	
	⑤ 라이브커머스 방송 그립, 네이버 쇼핑라이브, 쿠팡 쇼핑라이브 등 방송 비용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인삼 식품제조·즉석제조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자격요건
 - 공고마감일('21.4.23)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제조업이 아닌 단순 유통 서비스업인 경우

- 우대사항: 최대 5점
 - 신규 소공인('15년부터 현재까지 소공인센터 지원사업 전무기업)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 4. 12.(월) ~ 4. 23(금) 18:00까지 (기한엄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e-mail, 우편접수 중 택하여 신청·접수
 - 방 문 :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e-mail : jisuk0318@ginherb.re.kr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만 인정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구비서류	개수	비고
작성 서류	① <서식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각 1부	필수 서류
	② <서식2> 사업신청서		
	③ <서식3> 사업수행 계획서		
	④ <서식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 등록확인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비 (업태 : 제조업 必 포함)	1부	필수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개수	비고
소공인 확인서류	⑥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 공고마감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각 1부	필수 서류
	⑦ 업종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 조회) * 국세청 홈택스 주업증명(업종코드) 조회화면 캡처 후 자필서명 必		
	⑧ 매출액확인서류(택 1가지) * 발급가능한 최근 1년의 매출증빙자료 (①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② 부가세과세표준증명+부가세신고서, ③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창업한자 등 매출액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참고4]주업증확인서 류를 작성하여 제출		
소공인 확인서류	⑨ 국세 납세 완납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	각 1부	필수 서류
	⑩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		
	⑪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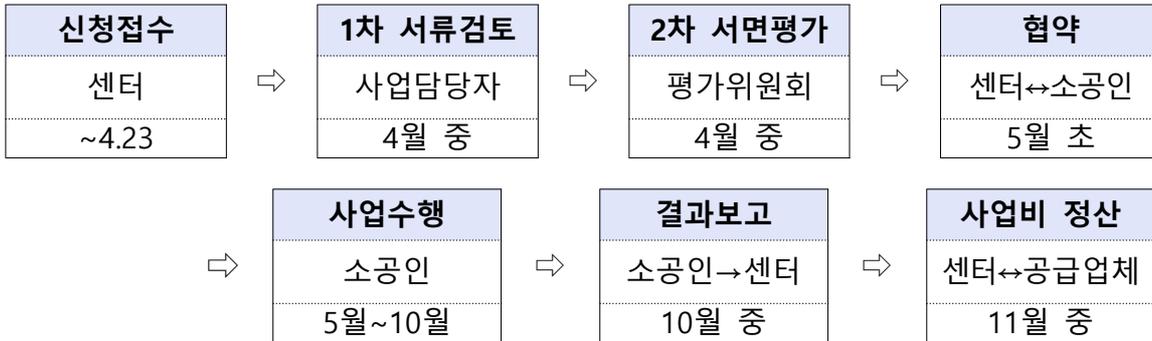
□ 평가절차 : “①서류검토 → ②서면평가” 절차 진행

구 분	선정 절차 및 기준
1차 서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보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요청(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및 미 보완 시 (탈락) - (반려)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차 선정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심의위원회)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4인 내외로 선정위원회 구성 - (심의내용) 추진계획서 심사/사업화(적정성), 타당성, 실용성 여부 심의 - (심의방법) 서면평가

○ 선정 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 유·무선 개별 통지

5

추진절차(안)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 사업 완료 후 완료결과 및 지원금신청시 서류 검토 후 센터에서 공급업체로 지원금 지급
- 자부담금 : 사업기간 중 자부담금만 공급업체 소공인 직접 입금/ 이체영수증 완료결과 제출시 첨부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등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등)

7

문의처

-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041-750-1653

- (참고) 1. 지원범위 및 내용 1부.
 2. 제출서류 발급처 1부
 3.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1부.

(붙임) 인삼집적지 온라인 활성화 사업 작성서류 양식 1부. 끝.

붙임1

지원 범위 및 내용

지원항목	기준 및 범위	지원금액
온라인마케팅	① 쇼핑몰 멘토링 컨설팅 온라인 운영 정밀진단 및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커리큘럼 제시	최대 400만원
	② 콘텐츠 제작지원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제품사진 및 영상촬영 지원	
	③ 판매채널 입점 및 상품등록 지원 다채널 온라인몰 입점지원(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④ 온라인광고 및 SNS 활성화 홍보 지원 - 온라인광고(네이버 검색광고, 오픈마켓광고, 소셜커머스광고 등) - 소셜미디어 활성화작업(유튜브채널, 인스타그램) - 체험단 마케팅(인플루언서 활용)	
	⑤ 라이브커머스 방송 그립, 네이버 쇼핑라이브, 쿠팡 쇼핑라이브 등 방송 비용 지원	

붙임 2

제출서류 발급처

연번	서류명	발급처
1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 세무소 또는 국세청 홈텍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업태 : 제조업 必)
2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1577-1000)
3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	(매출증빙 중 택 1) ▶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관할세무소 또는 국세청 홈텍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5	▶ 주업종 코드 확인 (주업종명(업종코드) 조회 화면 인쇄)	국세청 홈텍스(국번없이 126)(www.hometax.go.kr) * 로그인>my홈텍스>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주업종명(업종코드) 조회 후 인감 또는 자필 서명 날인
6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작성 (업종명(업종코드)이 여러 개인 경우, 주업종(코드)기준으로 작성)	붙임 3
7	▶ (국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관할 세무소 또는 국세청 홈텍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8	▶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관할 읍·면·주민센터, 민원24(www.minwon.go.kr) 위택스(www.wetax.go.kr)
9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 명시 및 주업종이 식료품제조업(C10) 또는 음료제조업(C11) 명시 必)

붙임 3**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최근창업한 자로서 (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한 경우, 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주업종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실제 영업 중인 주업종* 및 코드 (예 : 제조업, C10)		

* 주업종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을 통한 모든 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업체 :		
대표자 :		(인, 서명)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장 귀하